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5-1038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4호(2011.05.06.) 촉진계획변경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2013-09호(2013.01.17.)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06호(2014.11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32호(2015.05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20호(2015.10.15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9일

성 북 구 청 장 인

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공람 · 공고 내용

- 가. 사업명칭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189-3번지 일대
- 다. 시행면적 : 86,921.7㎡
- 라. 건축계획 : 지하2층/지상29층, 19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1,7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13,043.2㎡, 녹지3,235.5㎡, 공원5,000㎡ 공공공지1,336㎡

3. 공람기간 : 2015.10.29. ~ 2015.11.12.

4. 시 행 자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(석관동, 장위뉴타운 10층 1002호)
- 성 명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

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0개월

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2241-2833)

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909-3695)

7. 관계도서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